특 별 징 수 로 기 납 부 세 액 이 있 는 경 우

안분계산은 이렇게!!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4,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지 C시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4,000원	A(본점) (70%)	B(지점) (30%)	→	각 사업장에 안분신고
6,000원			→	차감납부세액 (안분신고납부)

특별징수 세액은 납세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구 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70%)	B(30%)	C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4,000원
기납부세액	총액	4,000원		
	안분	2,800원	1,200원	
차감납부할세액		4,200원	1,800원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지 C시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10,000원	A(본점) (70%)	B(지점) (30%)	→	총부담세액 안분
	21,000원		→	환급대상액 (본점 일괄 환급)

납세자의 총부담세액 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구 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70%)	B(30%)	C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31,000원
기납부 세액	총 액	31,000원		
	안분대상액	10,000원 (총부담세액)		
	안 분	7,000원	3,000원	
	본점가산 (=환급)	21,000원 (31,000원 – 10,000원)		
	소 계	28,000원	3,000원	
차감납부할세액		-21,000	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9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은 없음

법인세를 공제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삼척시청 세무과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12월말 결산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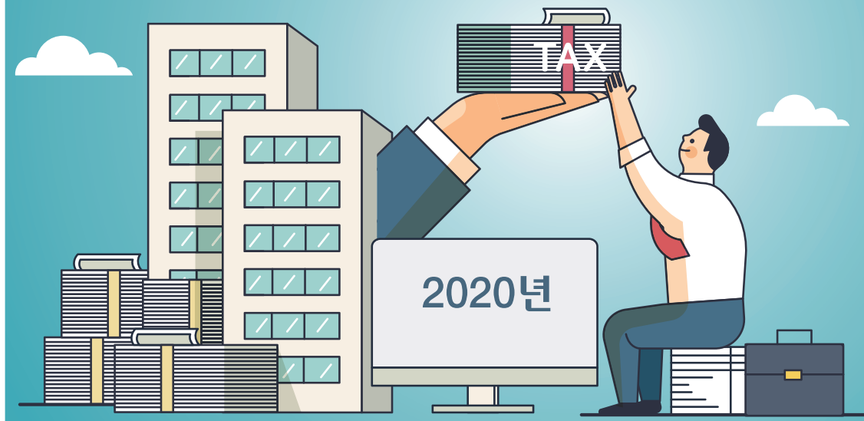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삼 척 시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법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신고 · 납부기한

구분	신고 · 납부기한
내국법인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37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와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의24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확진환자 · 격리자 · 방문 사업장, 기타 직 ·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

지원내용 납부기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서는 5.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삼척시청 세무조사부서에 우편 · 팩스를 통해 신청

문의사항

삼척시청 세무과
☎ 033-570-3784, Fax 033-570-3134

www.samcheok.go.kr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www.samcheok.go.kr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5%	9억 4,2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01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표준세율(1%~2.5%)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4%) 지방세법 제103조의31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0.9%(20억 초과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02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 지방세법 제103조의31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없음

⊕ 가산세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자산 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추가납부)

03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2018.1.1. 이후 성립분)

04 경정 · 수정 신고 등 가감액

⊕
- '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 (당초세액의 100분 10에 미달되는 경우)

05 차감 납부세액

- 확정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수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4